

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0나2036817(본소), 2020나2036824(병합),
2020나2036831(병합), 2020나2036848(병합), 2021나2013309(반소) 판결 [유언무효확인의
소등 · 유류분 반환 · 유류분청구의 소 · 유류분반환청구 · 구상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0나2036817(본소), 2020나2036824(병합),
2020나2036831(병합), 2020나2036848(병합), 2021나2013309(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7가합57991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진, 최윤아

2. B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3. C

원고(반소피고)2 및 원고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능규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윤석빈, 김지훈

5.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엘, 담당변호사 조경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F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2. G

피고1 및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변론 종결 2021. 11. 5.

판결 선고 2021. 12.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7가합579915(본소),
2018가합523001(병합), 2018가합530214(병합), 2018가합530795(병합)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 원고(반소피고) E의 각 예비적 청구,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는,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 원고(반소피고) D, 원고(반소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500,184,192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500,184,192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500,184,19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반소피고) A에게 72,053,188원 및 그중 65,644,674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2020. 9. 10.까지, 나머지 6,408,514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2021. 12. 3.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D, 원고(반소피고) E에게 각 70,819,858원 및 그중 각 65,644,674원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18. 6. 12.부터, 원고(반소피고) D에게 2018.

4. 18.부터, 원고(반소피고) E에게 2019. 3. 21.부터 각 2020. 9. 10.까지, 나머지 각

5,175,184원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18. 6. 12.부터, 원고(반소피고) D에게 2018. 4. 18.부터, 원고(반소피고) E에게 2019. 3. 21.부터 각 2021. 12. 3.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 C에게 89,140,220원 및 그중 65,644,674원에 대하여는 2018. 6. 12.부터 2020. 9. 10.까지, 5,175,184원에 대하여는 2018. 6. 12.부터 2021. 12. 3.까지, 나머지 18,320,362원에 대하여는 2021. 10. 30.부터 2021. 12. 3.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G은,

1) 가)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 원고(반소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257,670,644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257,670,644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257,670,644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253,152,934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253,152,934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253,152,93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 원고(반소피고) A에게 4,736,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21. 12.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반소피고) B, 원고(반소피고) D, 원고(반소피고) E에게 각 4,100,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18. 7. 3.부터, 원고(반소피고) D에게 2018. 4. 18.부터, 원고(반소피고) E에게 2019. 3. 21.부터 각 2021. 12. 3.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4) 원고 C에게 22,421,112원 및 그중 4,100,750원에 대하여는 2018. 7. 3.부터 2021. 12. 3.까지, 나머지 18,320,362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2020. 9. 10.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 원고(반소피고) D, 원고(반소피고) E의 각 주위적

청구와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C, 원고(반소피고) D, 원고(반소피고) E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F, 피고(반소원고) G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의 2)항, 3)항, 4)항 및 나의 2)항, 3)항,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이하 다른 반소피고의 경우에도 같다)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의 주위적 청구

망 H 명의의 2016. 6. 24.자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B, C은 2021. 5. 18.자 부대항소장을 통하여 위 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고, 종전의 유류분 반환청구 등은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청구 등)

1) 원고 A[2020나2036817(본소) 사건]

피고 F는 원고 A에게 975,390,341원 및 그중 ① 287,555,1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17.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② 33,380,9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3,247,0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④ 나머지 451,207,1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G은 원고 A에게 418,024,432원 및 그중 ① 287,555,1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17.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② 33,380,9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97,088,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감축됨).

2) 원고 B, 원고 C[2020나2036831(병합) 사건]

피고 F는 원고 B에게 975,390,341원, 원고 C에게 993,710,703원(= 유류분 975,390,341원 + 구상금 18,320,362원) 및 그중 ① 각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5. 4.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② 각 14,955,2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③ 각 1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각 211,727,9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⑤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451,207,147원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469,527,509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2021.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됨, 단 원고 C의 구상금 청구는 감축됨).

피고 G은 원고 B에게 418,024,432원, 원고 C에게 436,344,794원(= 유류분 418,024,432원 + 구상금 18,320,362원) 및 그중 ① 각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5. 4.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② 각 14,955,2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③ 각 1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2019. 5. 31.까지 연 1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105,569,160원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123,889,522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2019.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감축됨).

3) 원고 D[2020나2036824(병합) 사건]

피고 F는 원고 D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539,849,186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539,849,186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539,849,18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173,843,4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4. 6.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은 원고 D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253,152,934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253,152,934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253,152,93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81,520,8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8. 4. 6.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 E[2020나2036848(병합) 사건]

피고 F는 원고 E에게 975,390,341원 및 그중 ① 320,936,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3,247,0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③ 나머지 451,207,1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됨).

피고 G은 원고 E에게 418,024,432원 및 그중 ① 320,936,1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97,088,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감축됨).

다. 피고 G의 반소 청구 [2021나2013309(반소) 사건]

원고 A, B, D, E는 피고 G에게, 각 10,249,1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21. 7. 19.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G은 이 법원에서 위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 원고 D, 원고 E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 D, E에 대한 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원고들의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원고 B, 원고 C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판결을 구한다. 피고 F는, ①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452,755,515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452,755,515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452,755,515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A, B, D, E에게 각 58,253,960원, 원고 C에게 76,574,322(= 유류분 58,253,960원 + 구상금 18,320,3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017. 12. 5.부터,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018. 6. 12.부터, 원고 D에게 2018. 4. 18.부터, 원고 E에게 2019. 3. 2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은, ①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254,674,977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254,674,977 지분, 같은 목록 기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254,674,977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C에게 구상금 14,022,57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D,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유언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 출생하여 만 89세인 2016. 11. 21. 사망하였다. 망인은 망 J(1950년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D(개명 전 K)을, 망 L(2013. 10. 6.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원고 A, 피고 F, 원고 C, 원고 E를 차례로 두었다. 한편 피고 F는 그의 처인 N와 사이에 장녀인 피고 G(1990년생) 등 두 명의 딸을 두었다.

2) 자필 유언증서 작성 및 정정 망인은 2016. 6.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재산을 피고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갑가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피고 F는 이 사건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망인의 사망(2016. 11. 21.) 후인 2016. 11.

25.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청구하였고, 2017. 7. 17. 시행된 유언검인 시, "이 사건 유언장은 A4용지 1장에 검정색 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음에 '유원장, 지사, O'라고 기재한 부분은 '유언장, 재산, F'로 각 수정된 다음 무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정 전·후의 기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원장H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지사G와 O에 상속한다.2016년 6월 24.일서울시 종로구 M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유언장H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재산G와 F에 상속한다.2016년 6월 24.일서울시 종로구 M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	---

3) 이 사건 유언장의 작성 과정 망인은 신경외과전문의로 서울 종로구 M에서 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건강상태가 나빠져 2016. 7. 초경 의원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 F는 2016. 6. 24.경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을 제2호증), 망인은 집 침대에 앉아 A4용지 1장에 검정색 펜으로 위 표의 정정 전 기재와 같이 '유원장, H, 내가 사망하는 남아있는 지사, G와 O에 상속한다'라고 기재하였고, 하단의 '작성 일자와 망인의 주소와 성명' 부분은 피고 F가 다른 종이에 미리 기재하여 놓은 '일자, 주소, 성명' 부분을 망인에게 보여준 후 이를 따라 쓰게 하였다(한편 피고 F가 위와 같이 미리 기재하여 놓은 다른 종이 상단에는 '나 H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F와 G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의 성명 기재 옆에 무인을 찍자, 피고 F는 이 사건 유언장 기재 중 'O'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자신이 'F'라고 직접 쓴 글씨를 보여주었고, 망인은 이를 따라 자필로 'F'로 고쳐 쓰고, 정정 부분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 F는 다음 날 망인이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틀린 부분이 있으니 다시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종이에 고칠 부분을 써서 보여주는 등으로 필담을 하며, 망인으로 하여금 '지사'를 '재산'으로, '유원장'을 '유언장'으로 고치고 무인을 찍게 하였다. 망인은 피고 F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언장을 고치게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전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G(피고 G)를 거쳐서 너(피고 F)하고 둘이서 의논해서 결정하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G(피고 G)가 여자이지만 종손이야. 종손 자격이 있어. 그러고 너(피고 F)도 종손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이 종손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 12, 15호증, 갑라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이 망인의 의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작성 당시 피고 F가 보여주는 글자도 겨우 받아쓸 정도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유언의 효력은 없고, 위 유언장은 민법상 자필 유언증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만 89세의 고령으로 피고 F와 필담을

하는 등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유언장을 자필로 쓰는 과정에서 피고 F가 유언장에 쓸 내용을 적어 보여주거나 자필 유언증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가 제12호증, 갑나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글을 써서 보여줘야 했으나, 글을 읽고 그에 관해 대답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에도 피고 F와 의사소통을 할 때 반응속도가 느린 편이기는 하였으나, 유언장의 작성 전·후로 피고 F가 쓴 글을 읽고 이에 관해 답을 했으며, 피고 F가 망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망인에게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망인은 Q파 18세손 종손으로, 2016. 6. 25. 이 사건 유언장을 수정하면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종손인 피고 F(장남), 피고 G(장손)에게 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외에도 망인은 사망 후 장사(葬事)와 관련하여 화장을 하여 배우자의 묘 옆에 작은 패를 작성하여 묻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장사 방법, 향후 치료 장소, 재산처분 등에 관하여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이 상속에 관한 망인의 기존 의사에 반하므로, 망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매 증상은 치매의 종류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피고 F와 의사소통을 하고,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② 망인이 2014~2015년경 원고 C와 대화하며 '내가 갖고 있는 거 쓰다가, 마음대로 쓰다가 그러고 남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그렇지만 현재 너(피고 F)한테 준 거 이상으로 뭘 줄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수명이 다하면 가게 되면 그때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면 죽기 전에 내가 너(피고 F)한테 준다는 말을 한다고 그랬어,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때 가지고 가라, 그러나 남아있는 게 없으면, 없는 거지.'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망인이 원고 C와의 대화에서 피고 F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며 앞으로는 피고 F에게 생전증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F를 상속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사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유언장이 망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가장 간단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 참조),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 진의와의 일치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 그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지만, 타인의 손에 의지하여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거나 어느 정도 문자를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자가 타인이 쓴 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방식으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유언증서가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이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고 무인을 찍는 과정에서 피고 F가 써놓은 글을 받아 적는 등으로 피고 F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자서(自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한편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유언 내용을 추가·제거·변경하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자서 및 날인만 요구되고, 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기재 중 'O'를 'F'로, '유원장'을 '유언장'으로, '지사'를 '재산'으로 각 변경하면서 이를 자서하고 무인을 찍은 이상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였다.

다만 '유원장', '지사' 부분은 이 사건 유언장 작성일 다음 날에 정정되어 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수정 방식이 민법 제1066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유원장', '지사' 부분은 상속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 단순한 오기의 정정으로서 유언장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이고, 'F' 부분 역시 오기로 볼 수 있으나 설령 수증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유언장 작성 직후 같은 날에 정정하였으므로 정정한 일자를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자서와 무인'의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한 변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유언장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 등) 및 피고 G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피고들이 모두 유증받아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 C은 피고들이 유증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 후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C의 위 납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민법 제1113조 제1항),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A = 1) \text{ 적극적 상속재산액} + 2) \text{ 증여액} - 3) \text{ 상속채무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B = \text{법정상속분} \times \text{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C = \text{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및 수유액}$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D = \text{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text{상속채무 부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7,362,823,442원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가진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가액 합계 5,569,364,546원)과 아래 표 기재 각 예금채권(가액 합계 1,793,458,896원)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적극적 상속재산을 모두 유증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4, 1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R의 2019. 8.

22.자 시가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 합계 5,569,364,546원

나) 아래 표 기재 각 예금채권, 가액 합계 1,793,458,896원

1	AH은행(계좌번호 1 생략)	28,568,283원
2	AH은행(계좌번호 2 생략)	915원
3	AH은행(계좌번호 3 생략)	10,486,590원
4	AH은행(계좌번호 4 생략)	35,430,749원
5	AH은행(계좌번호 5 생략)	30,000,000원
6	AH은행(계좌번호 6 생략)	50,000,000원
7	AH은행(계좌번호 7 생략)	40,000,000원
8	AH은행(계좌번호 8 생략)	673,601,996원
9	AH은행(계좌번호 9 생략)	230,000,000원
10	AH은행(계좌번호 10 생략) 1) 순번6, 8, 10 예금채권은 피고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2018. 1. 30. 전액해지·인출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2호증)	679,271,585원
11	AH은행(계좌번호 11 생략)	1,264,167원
12	기타은행	142,915원

1	AH은행(계좌번호 1 생략)	28,568,283원
합계	1,778,767,200원	

* 다만, 예금채권 순번5 내지 9의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른 순번1 내지 12 각 예금채권 총액이 1,793,458,896원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액: 피고 F의 특별수익액 합계 4,603,305,597원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수익재산의 상속개시시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6년 108.7) ÷ 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원 미만 버림)와 같이 계산하기로 한다. 연도별 GDP 디플레이터 수치는 공지의 사실로, 2010년 수치 100을 기준으로 할 때 1996년 71.2., 1997년 74.0., 2003년 85.5., 2004년 88.0., 2005년 88.9., 2006년 88.8., 2007년 90.9., 2011년 101.6이다.

이 사건 증여액과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 F가 아래와 같은 각 부동산(가액 합계 3,873,181,810원)과 현금 730,123,787원(= AR 아파트 전세보증금 635,672,514원 + 기타 현금 94,451,273원)을 사전증여 받았음이 인정되고, 피고 G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3 내지 45호증, 갑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의 2019. 7. 12.자 시가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강남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2018. 8. 23.자 A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사전증여 부동산, 가액 합계 3,873,181,810원

1	서울 종로구 M 대 326.3m ²	2,301,272,480원	2003. 6. 5.
2	서울 종로구 M 지상 각 건물	723,456,020원	1998. 8. 27.2003. 6. 5.
3	광주 북구 AS	AJ 임야 19,438m ²	148,311,940원
4	AN 임야 4,463m ²	37,444,570원	2007. 1. 8.
5	AO 임야 2,380m ²	20,372,800원	2007. 1. 8.
6	AK 대 653m ²	202,430,000원	2007. 1. 8.
7	AK 지상 건물	170,000,000원	2007. 1. 8.
8	AP 대 430m ²	109,822,000원	2007. 1. 8.
9	AL 도로 64m ²	6,547,200원	2012. 6. 20.
10	AM 잡종지 572m ²	153,524,800원2) 위 사전증여 부동산 순번3 내지 10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었는데, 순번10 부동산의 가액은 계산상 153,524,800원(= 2016년 개별공시지가 268,400원/m ² × 면적 572m ²)이 되어야 옳다. 제1심 가액 25,064,00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 잡는다.	2013. 11. 20.
합계	3,873,181,810원		

위 순번1 부동산 가액에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7억 원을 피고 F가 인수하였음에도 그 실질적인 변제자는 망인이므로 위 토지가액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이 없이 상속개시시 기준 감정평가액(3,191,214,000원)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가 제33호증의 1, 제34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8. 8. 23.자 A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03. 3. 10. 위 순번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AH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7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 F는 2003. 6. 9.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위 순번1 부동산 및 순번2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 ③ 피고 F는 2003. 6. 10. 1억 2,000만 원, 2003. 6. 18. 770만 원, 2003. 7. 10. 2억 450만 원, 2003. 7. 31. 2억 2,780만 원, 2003. 8. 11. 9,000만 원, 2003. 8. 13. 5,000만 원 등 대출금 7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4. 10. 해지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망인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거나 피고 F에게 그 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덧붙여 피고 F가 대출금 상환에 지출한 2003. 7. 10.자 2억 450만 원은 망인이 피고 F에게 2003. 7. 9. 지급한 M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나, 아래 다)항 '기타 현금' 증여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망인의 증여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담보채무의 공제 가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부담부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F가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7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채무액 7억 원을 상속개시 당시인 2016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889,941,520원3) 을 순번1 부동산 등 증여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순번1 부동산의 가액을 위 표 기재와 같이 2,301,272,480원(= 상속개시 당시 감정평가액 3,191,214,000원 - 위 889,941,52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서울 강남구 AR아파트 AT호(이하 'AR 아파트'라 한다) 전세보증금 635,672,514원
갑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8. 8. 23.자 A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F가 2003. 7. 말경 AU 소유의 AR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망인은 2003. 7. 29. AU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2003. 8. 22. 망인 명의 AH은행 계좌에서 4억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AR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F는 망인이 송금한 위 5,000만 원이 AR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계약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망인이 4억 원을 인출한 날짜와 망인 명의로 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일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 F는 망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피고 F의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망인이 AR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F가 2013년경 AR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2003년경 AR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F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전세보증금 5억 원의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인 635,672,514원4) 을 피고 F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

다) 기타 현금 94,451,273원

1	1996. 3. 29.	2,801,300원	4,276,703원	순번1 내지 8은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으로, 당심에서 다투지 않거나, 제1심법원의 2018. 8. 23.자 AH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2	1996. 5. 4.	2,801,300원	4,276,703원	
3	1996. 8. 19.	7,202,600원	10,996,104원	
4	1997. 3. 11.	1,001,100원	1,470,534원	
5	1997. 5. 26.	1,802,200원	2,647,285원	
6	1997. 5. 27.	1,802,200원	2,647,285원	
7	2007. 6. 29.	22,500,000원	26,905,940원	
8	2011. 10. 19.	22,500,000원	24,072,342원	
9	2004. 12. 3.	3,000,000원	3,705,681원	위 제공명령결과 (86~90면, 105면)
10	2005. 1. 3.	3,000,000원	3,668,166원	
11	2005. 2. 3.	3,000,000원	3,668,166원	
12	2005. 3. 3.	3,000,000원	3,668,166원	
13	2006. 1. 26.	2,000,000원	2,448,198원	
합계		94,451,273원		

(1) 순번 9 내지 13 각 현금 증여에 관하여(증여 인정)

위 현금 증여액 총 1,4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 F는 2003. 6. 9. 망인에게 앞서 본 사전증여 부동산 중 순번2 부동산(이하 'M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45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03. 7. 9.부터 2005.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망인이 2003. 7. 8, 9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연체차임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1호증의 1의 기재 및 위 A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F에게 2003. 7. 9., 2003. 8. 11., 2003. 9. 9. 각 450만 원을 월임대로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M 건물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상당액에 관하여(증여 불인정)

원고들은, 피고 F가 2003. 6. 5. 망인으로부터 M 건물을 증여받은 후, 위 건물에 관하여 망인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차임으로 2억 2,0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합계액 5억 2,050만 원이 피고 F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8. 8. 23.자 A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F가 망인과 사이에 M 건물에 관하여 2003. 6. 9.자, 2005. 7. 9.자, 2007. 7. 9.자, 2009. 1. 9.자, 2009. 6. 30.자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온 사실, 망인이 2003. 7. 9. 피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이 피고 F에게 2003. 10. 19.부터 2013. 10. 7.까지 차임으로 2억 2,0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F가 부친인 망인에게 당연히 M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 F가 망인으로부터 M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소유권자로서 M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F에게 M 건물을 망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망인과 피고 F 사이의 M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금인출금 및 전화요금에 관하여(증여 불인정)

원고들은, 2016. 10.경 망인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합계 7,341,940원이 피고 F의 근무지 지점에서 출금되었고, 199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망인 명의 AV은행 계좌에서 피고 F 명의의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776,410원이 출금되었으므로, 위 각 돈이 피고 F의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F의 근무지 지점에서 망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출금이 피고 F에게 증여 내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 F는 위 전화를 망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피고 F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에 비추어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해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속채무액 : 0원(다툼 없는 사실)

라. 구체적 유류분액[앞서 본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앞서 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은 11,966,129,039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7,362,823,442원(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5,569,364,546원 + 예금채권 1,793,458,896원) + 증여액 4,603,305,597원(사전증여 부동산 합계 3,873,181,810원 + 현금 합계 730,123,787원) - 상속채무액 0원]이다. 이에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인 1/12(법정상속분 1/6 × 1/2)을 곱하면 원고들 각 유류분액은 997,177,419원이고(원 미만 버림),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		없음		0원
피고 F	부동산	2,784,682,273원 (유증 부동산 1/2)	3,873,181,810원	8,284,717,318원
현금	896,729,448원 (유증 현금 1/2)	730,123,787원		
합계	3,681,411,721원	4,603,305,597원		
피고 G	부동산	2,784,682,273원 (유증 부동산 1/2)		3,681,411,721원
현금	896,729,448원 (유증 현금 1/2)	없음		
합계	3,681,411,721원	0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1,966,129,039원			

원고들		없음		0원
원고들의 구체적 유류분액 $A \times B(1/12 \text{ 지분})$	997,177,419원			

마. 당해 유류분권자(원고들)의 특별수익액(C) 및 순상속분액(D): 모두 없음

바. 유류분 부족액($= A \times B - C - D$)

원고들과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997,177,419원	0원	997,177,419원
원고 B	997,177,419원	0원	997,177,419원
원고 C	997,177,419원	0원	997,177,419원
원고 D	997,177,419원	0원	997,177,419원
원고 E	997,177,419원	0원	997,177,419원
피고 F	997,177,419원	8,284,717,318원	-7,287,539,899원
피고 G	0원	3,681,411,721원	-3,681,411,721원

사. 유류분 반환

1) 관련 법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 비율과 반환액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에 비례하여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비율 및 반환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원 미만 버림).

피고 F	7,287,539,899원	0.66	3,290,685,482원	658,137,096원
피고 G	3,681,411,721원	0.34	1,695,201,612원	339,040,322원
합계	10,968,951,620원	1	4,985,887,094원	997,177,418원

3) 수유 부동산 및 현금 간 반환 비율과 반환액 유류분 반환의 순서는 유증이 증여에 우선하며(민법 제1116조), 피고들이 유증받은 재산만으로 원고들 전원의 유류분을 반환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들은 각 유류분 반환액을 수유재산에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피고들이 유증받은 부동산과 현금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별로 반환해야 할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원 미만 버림).

피고 F	부동산	2,784,682,273원	0.76	500,184,192원
현금	896,729,448원	0.24	157,952,903원	
피고 G	부동산	2,784,682,273원	0.76	257,670,644원
현금	896,729,448원	0.24	81,369,677원	

4) 피고들의 부동산 반환 지분 피고들이 유증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총 가액이 5,569,364,54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가 제1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각 부동산 중 순번1 내지 10 부동산은 단독으로, 순번11 부동산은 1/5 지분에 관하여, 순번12 내지 15 부동산은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① 위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피고 F는 각 5,569,364,546분의 500,184,192 지분, 피고 G은 각 5,569,364,546분의 257,670,644 지분에 관하여, ② 위 순번11 부동산 중 피고 F는 27,846,822,730분의 500,184,192 지분, 피고 G은 27,846,822,730분의 257,670,644 지분에 관하여, ③ 위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피고 F는 각 16,708,093,638분의 500,184,192 지분, 피고 G은 각 16,708,093,638분의 257,670,644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D은 피고 G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D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지분 중 각 분자 부분 모두를 위 '257,670,644 지분'이 아닌 '253,152,934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의무를 인정하기로 한다.

5) 피고들의 현금 반환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 F는 각 157,952,903원, 피고 G은 각 81,369,6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원고 C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은, 피고들이 유증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앞으로 취득세 등 합계 99,598,190원이 부과되어 원고 C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구상금으로 각 18,320,3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광주북구청장이 취득세 85,234,060원 및 재산세 11,807,640원을, 담양군수가 취득세 2,506,570원 및 재산세 49,920원을 각 부과한 사실, 원고 C이 2017.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부과금액 합계 99,598,1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이 유증받은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각 2,784,682,273원이고, 그중 유류분으로 피고 F가 2,500,920,960원(= 원고별 부동산 반환가액 500,184,192원 × 5), 피고 G이 1,283,835,510원(= 원고 A, B, C, E 반환가액 각 257,670,644원 + 원고 D 반환가액

253,152,934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 합계 5,569,364,546원 중 피고 F의 취득분 가액은 283,761,313원(= 2,784,682,273원 - 유류분 반환액 2,500,920,960원), 피고 G의 취득분 가액은 1,500,846,763원(= 2,784,682,273원 - 유류분 반환액 1,283,835,510원)이므로, 피고 F는 5,074,566원(= 99,598,190원 × 283,761,313 / 5,569,364,54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G은 26,839,977원(= 99,598,190원 × 1,500,846,763 / 5,569,364,546)의 구상의무가 있게 된다. 다만 ① 피고 F는 항소취지에서 '18,320,36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일부(2018. 6. 1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함으로써 제1심 인용금액 중 위 범위까지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C에게 구상금으로 18,320,3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② 피고 G은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인정된 구상의무 범위 내인 18,320,3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피고들의 상계 항변 및 피고 G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2018. 1. 30. 상속세로 1,340,286,540원을 납부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공동면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각 164,401,973원의 상속세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피고 F는 각 87,133,045원, 피고 G은 각 77,268,927원의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 중 현금반환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또한 피고 G은, '원고 A, B, D, E에 대해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면,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0,249,197원의 구상금 채권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 청구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10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에 의하면,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제42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구상권 성립

갑가 제14호증, 을 제12,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8. 9. 20.자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2018. 1. 30. 이 사건의 상속세로 1,340,286,540원(= 총결정세액 1,286,263,480원 + 가산금 54,023,060원)을 납부한 사실, ② 상속세 결정세액 1,286,263,480원은, 앞서 본 적극적 상속재산과 피고 F의 상속개시 전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등을 거쳐 상속세과세표준을 3,952,944,153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산출세액 1,516,472,076원에서 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87,290,433원과 신고세액공제 142,918,164원)를 하여 결정되었고, 위 산출세액 1,516,472,076원에는 피고 G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구상 상속세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유류분 반환액을 기초로 상속세 경정청구 절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통해 다시 상속인별 상속세가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유류분 반환 비율에 따라 위 상속세에 대한 구상의무를 산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오로지 피고들이 유증받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으로 앞서 본 상속세 결정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속세 산출 과정에서 피고 G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구상 범위가 향후 축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1,340,286,540원은 원고들과 사이에서 확정적인 상속세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유류분 반환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액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비율에 따라 상속세 구상 의무를 산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세 총액 중 각자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피고들이 위 상속세 1,340,286,540원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원고들 고유의 상속세 부담부분도 공동면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상속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의 구상권의 범위

나아가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비율에 따라 구상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납부된 상속세액은,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 1,340,286,540원과 피고 F가 선납부한 증여세액공제액 87,290,433원의 합계인 1,427,576,973원이다.

(2) 상속세 과세대상재산 가액에 대해 원고들이 반환받는 유류분 비율은 각 12%이다[계산 근거: (원고 A, B, C, E가 반환받는 유류분 각 997,177,416원5) 및 원고 D이 반환받는 유류분 992,659,706원6))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가액 8,211,276,752원(=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7,362,823,442원 + 세액공제 대상이 된 피고 F의 앞서 본 사전증여 부동산 순번3 내지 10의 상속개시시 가액 848,453,310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구상할 범위는 각 171,309,236원(= 위 1,427,576,973원 × 12%)이다.

(4) 한편 피고 F의 납세액은 757,433,703원(= 1,340,286,540원의 1/2 + 위 선납부 증여세액공제액 87,290,433원)이고, 피고 G의 납세액은 670,143,270원이므로, 피고들 사이의 납세액 부담비율은 피고 F 53%, 피고 G 47%이다.

(5) 그러므로 원고별 상속세 구상채무액은 피고 F에 대하여 각 90,793,895원(= 위 각 171,309,236원 × 0.53, 원 미만 버림), 피고 G에 대하여 각 80,515,340원(= 위 각 171,309,236원 × 0.4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피고들의 상계 항변

피고들은 2021. 7. 19.자 준비서면 등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 관련 구상금 채권으로 피고 F는 각 87,133,045원, 피고 G는 각 77,268,927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 현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피고들은 2018. 1. 30.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원고들을 공동면책되게 하였다.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F의 구상금 채권 각 90,793,895원 중 상계 의사표시를 한 각 87,133,045원 및 피고 G의 구상금 채권 각 80,515,340원 중 상계 의사표시를 한 각 77,268,927원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현금 반환채권과 2018. 1. 30.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① 피고 F는 원고 A에게 72,053,188원(= 유류분 현금반환액

157,952,903원 - 85,899,715원7)), 원고 B, C, D, E에게 각 70,819,858원(= 유류분 현금반환액

각 157,952,903원 - 각 87,133,0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G는 원고

A에게 4,736,102원(= 유류분 현금반환액 81,369,677원 - 76,633,575원8)), 원고 B, C, D,

E에게 각 4,100,750원(= 유류분 현금반환액 각 81,369,677원 - 각 77,268,9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G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는 상계 의사표시를 한 구상금 채권 77,268,927원 중 상계를 하고 남은 금액을 전제로 반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구상금 채권은 모두 상계로 소멸되어 남은 것이 없으므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차.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F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500,184,192

지분, 위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500,184,192 지분, 위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중 각 16,708,093,638분의 500,184,19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 원고 A에게 유류분으로 72,053,188원, 원고 B, D, E에게 유류분으로 각 70,819,858원 및 그중

① 제1심 인용금액인 각 65,644,674원에 대하여는 원고 A에게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8. 1.

31.부터, 원고 B에게 2020나2036831(병합) 사건의 2018. 5. 4.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6. 12.부터, 원고 D에게 2020나2036824(병합) 사건의 2018. 4. 6.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8.부터, 원고 E에게 2020나2036848(병합) 사건의 2019.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3. 21.부터, 피고 F가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당심 인용금액으로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6,408,514원, 원고

B, D, E에 대한 나머지 각 5,175,184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위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부터

피고 F가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3.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 원고 C에게 89,140,220원(= 유류분 70,819,858원 + 취득세 등 납부금의 구상금

18,320,362원) 및 그중 ① 제1심 인용금액인 유류분 65,644,674원에 대하여는

2020나2036831(병합) 사건의 2018. 5. 4.자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6. 12.부터 피고 F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 ② 당심

인용금액인 나머지 유류분 5,175,184원에 대하여는 위 2018. 6. 12.부터 피고 F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3.까지, ③ 구상금 18,320,3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

10. 30.부터 피고 F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피고 G은,

가) 원고 A, B, C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257,670,644 지분, 위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257,670,644 지분, 위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각 16,708,093,638분의 257,670,644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에게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순번1 내지 10 부동산 중 각 5,569,364,546분의 253,152,934 지분, 위 순번11 부동산 중 27,846,822,730분의 253,152,934 지분, 위 순번12 내지 15 부동산 각 16,708,093,638분의 253,152,93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나) 원고 A에게 유류분으로 4,736,102원, 원고 B, D, E에게 유류분으로 각 4,100,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위 2018. 1. 31.부터, 원고 B에게 위 2018. 5. 4.자 소장 부분이 피고 G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3.부터, 원고 D에게 위 2018. 4. 18.부터, 원고 E에게 위 2019. 3. 21.부터, 피고 G이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 원고 C에게 22,421,112원(= 유류분 4,100,750원 + 구상금 18,320,362원) 및 그중 유류분 4,100,75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7. 3.부터 피고 G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3.까지, 구상금 18,320,3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피고 G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위 각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G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 A, B, C, E의 각 예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G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빈

판사박은영

판사김민아

별지

1) 순번6, 8, 10 예금채권은 피고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2018. 1. 30. 전액해지·인출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2호증)

2) 위 사전증여 부동산 순번3 내지 10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었는데, 순번10 부동산의 가액은 계산상 153,524,800원(= 2016년 개별공시지가 268,400원/㎡ × 면적 572㎡)이 되어야 옳다. 제1심 가액 25,064,00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 잡는다.

3) = 7억 원 × 108.7(201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5.5(2003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4) = 5억 원 × 108.7(201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 85.5(2003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5) 997,177,416원 = 피고 F의 반환가액 658,137,095원(= 부동산 지분 가액 500,184,192원 + 현금 가액 157,952,903원) + 피고 G의 반환가액 339,040,321원(= 부동산 지분 가액 257,670,644원 + 현금 가액 81,369,677원), 원 미만을 버린 결과에 따라 당초 유류분액보다 3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다.

6) 992,659,706원 = 피고 F의 반환가액 658,137,095원(= 부동산 지분 가액 500,184,192원 +

현금 가액 157,952,903원) + 피고 G의 반환가액 334,522,611원(= 부동산 지분 가액 253,152,934원 + 현금 가액 81,369,677원)

7) 85,899,715원 = 상계 채권 87,133,045원 - 유류분 현금반환 가액 157,952,903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12. 5.부터 상계적상일인 2018. 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3,330원.

8) 76,633,575원 = 상계 채권 77,268,927원 - 유류분 현금반환 가액 81,369,677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12. 5.부터 상계적상일인 2018. 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5,352원.